창업자 은퇴와 가업승계 : 차등배당으로 종합소득세 미리 내기와 가업증여 및 상속공제 적용방법간 비교



박윤종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1. 중소제조업의 현황

- ① 오랜기간 기술 축적된 중소 제조업의 자녀가업승계 기피(제조업 혐오 등)
- ② 가업승계 위한 거액의 증여세 상속세 부담,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의 까다로움 존재
- ③ 창업자 노년 은퇴시 승계가족 없어 기업 도산 또는 매물로 나옴 : 중국기업이 싹쓸이 기술 유출함.

2.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상속공제의 문제점

-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 ① 가업지분선증여액 100억 중 35억원까지는 10%, 65억원은 20% 세율
- ② 향후 상속재산에 재합산됨.
- ③ 가족의 가업승계
- ④ 업종 · 규모유지 등
- (2) 가업상속공제(상속 ·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① 중소 · 중견기업
- ②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③ 상속공제액 200억(10년 이상), 300억(20년 이상), 500억(30년 이상 경영)
- ④ 상속인의 직접경영
- (3) (1), (2) 방법 모두 기업지분 가치는 적은 세금으로 이전되지만, 언젠가 기업내 잉여금 처분시 배당종합과세는 납부해야 함.

3. 대안

창업대주주가 자녀에 일부 지분증여 후 차등배당하여 종합소득세 납부함으로서 기업증여가치를 낮추고, 상속인이 가업승계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주주 지분이 자녀에게 승계되고, 전문경영인에 경영위임 가능함.

4. 차등배당과 가업증여 일반상속, 가업상속 간의 세금계산과 상속인 경영의무

(가정) 불입자본금 10억원. 매년 순익 10억원. 10년 경영으로 내부잉여금 100억원. 기업 가치평가액은 104억원(= 110억 · 40%+10억÷10%×60%)

방법	⑦ 지분선증여	<u></u>	@ 일반상속	라입상속공제
개념	(100억)	(90억)	(104억)	적용
① 행위시 세금	가업증여세 16억원	증여세 40.4억원 (종소세 37.4억	상속세 47.4억원	세금없음
		보다 큼)		(200억 공제)
② 향후 배당세금	90억원의 종소세+	깨다 조크리어 어ㅇ	90억원의 종소세+	90억원의 종소세 ·
(100억 중 90억 배당)	지방세 41.1억원	배당 종료되어 없음	지방세 41.1억원	지방세 41.1억원
	57.1억원			
③ 총세금합계	(상속재산 합산시	40.4억원	88.5억원	41.1억원
	증가함)			
④ 상속인의 경영의무	있음	없음	없음	있음
⑤ 전문경영대표 선임	불가	가능	가능	불가

5. 결 론

- ① 가업상속되어도 언젠가 기업내부잉여금은 최종적으로 배당(②)되어야 한다고 볼 때,
 - ① 차등배당하고 지분을 액면가로 승계하는 방법이 합산세금이 가장 적으면서. 상속 인 등 자녀가족의 가업경영의무가 없고 전문경영자 위임 가능
- ② 기업이여금이 모두 기업의 재고, 외상, 생산설비투자로 잠겨있다면, 배당결의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한 후 분할하여 배당받거나, 금융차입금을 조달하여 선배당받을 수 있음(배당받은 금액으로 회사에 다시 개인대여하고 회사의 금융차입금을 상환함)

 $2020 \cdot 04 \cdot 29$ www.taxpark.com 3